

1.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2. 1. 4. 개정, 22. 7. 5. 시행) 및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22.1월)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책임감면 범위 확대 및 구제절차 안내 등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규정명을 변경하고, 신고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추가(안 제2조)

나. 신분공개 동의여부, 신고 상담·접수 구체화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등 신설(안 제6조, 별지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서식)

다. 신고의 조사·처리 및 신고의 이송 등 구체화(안 제7조, 제7조의2) 국민권익위 이첩·송부 신고사건처리 방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보호·보상제도 및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안 제8조, 별지 제4호·제5호 서식)

마.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또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1조, 별지 제6호 서식)

바.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로 확대(안 제12조)

사.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마련 등(안 제15조)

신고자에 대한 징계 외에도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처분권자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 확대하고,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하도록 함

아. 신고자의 보호 조치와 구제절차 마련(안 제15조의2)

자.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안 제16조, 제17조)

차. 포상 및 보상금의 지급근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화하고 구조금 지급신청 규정을 신설(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카. 부패행위신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어 폐지(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으
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
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라. 국토교통부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
다.

7.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제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7조제1항 중 “접수된 신고내용”을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사항”을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한”을 “감사·조사한”으로, “환수”를 “환수, 수사의뢰, 고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제5항 후단 중 “(국무총리훈령 제601호)”를 “(국무총리훈령 제69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조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
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
요가 있는 사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
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
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4호서식의”로,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를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
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직자는 누구라도”를 “누구든지”로, “알면서도”를 “알

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로,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를 “알려주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서면으로”를 “별지 제6호서식의”로 한다.

② 장관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직자는 누구”를 “누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직자는”을 “누구든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직자는 누구”를 “누구”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관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의 제목 “(협조자 보호)”를 “(협조자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협조자”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5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협조자 보호)”를 “(협조자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협조자”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5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각 기관장”을 “장관”으로,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직자”를 “신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포상 및 보상 등) ① 국토교통부는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는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및 협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 · 보상금 ·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 보상금 ·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 보상금 ·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 · 보상금 ·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3(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 기소유예 · 기소중지 ·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 ·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4호 서식으로 변경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접수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 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일 일

국토교통부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 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일 일

국 토 교 통 부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시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는 경우는 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범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소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패신고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 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권익위 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4~3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패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귀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직업(직위)			
	[] 내부 신고자		[] 외부 신고자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조사결과	신고 접수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없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u>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생략) <u><신설></u> <u><신설></u> 3. 4. (생략) <u><신설></u> <u><신설></u>	<u>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u><삭제></u> 나. (현행과 같음) 다. <u>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u> 라. <u>국토교통부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u> 3. 4. (현행과 같음) 5. “불이익조치”란 <u>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u> 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신 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⑥ ----- 제5항-----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④ (생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

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

②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

-.

③ ----- 감사·조사한 -----
----- 환수, 수사
의뢰, 고발 -----.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
호)」을 준용할 수 있다.

⑥·⑦ (생략)

<신설>

-----.

-----(국무총리훈령 제696호)
-----.

⑥·⑦ (현행과 같음)

⑧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조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신 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8조(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제8조(보호·보상제도 안내) ---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1.·2. (생략)

제11조(신분비밀보장) ① 공직자는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별지 제4호서식의 -----
-----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11조(신분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
----- 알려주거 -----
-----.

② 장관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 별지 제6호서식의 -----
-----.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직자는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0. (생략)

② 공직자는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④ (생략)

⑤ 공직자는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15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

-----.

1. ~ 10.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누구-----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책임의 감면 등) ① 장관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

② (생략)

<신설>

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조의2(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제16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 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각 기관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 행위 신고를 한 공직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추천하거나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으며, 포상금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16조(협조자의 보호) 협조자-----

----- 제15조의2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장관-----

----- 신고
자-----
-----.

<삭 제>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③ 각 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
의하여야 한다.

<신 설>

<삭 제>

제17조의2(포상 및 보상 등) ① 국
토교통부는 신고에 의하여 현저
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
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
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를 한 자
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다.

③ 국토교통부는 신고자 및 협
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

고 및 협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한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3(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제18조(부패행위신고 심의위원회)

① 제1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에 부패행위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설치한 청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삭 제>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
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
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2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에 대
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